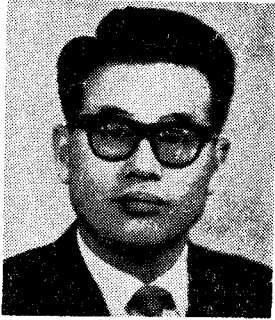


食品工業과 公正去來法

食品工業도 이 法을 直視해야



송 기 철

〈高大 商經大 教授〉

1. 80年代의 世界經濟

80年代를 우리는 「激動의 年代」라고 부르고 있다. 무엇이 「激動의 年代」이나에 대해선 사람에 따라서 見解의 차이가 있겠으나 分明한 것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國際的, 國內的, 產業的, 企業的, 側面에서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技術, 各 方面에 걸친 與件變化가 急激할 뿐만 아니라 그 變化가 不規則으로 이루어 豫測不許의 어려운 年代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80年代에 들어 오면서 國際적으로 볼 때에 政治적으로는 多極化時代 즉 春秋戰國時代의 느낌을 더 해가고 있다. 經濟적으로 볼 때면 「호메이니, 할아버지波動」으로 시작된 第2次 石油波動이 지금은 약간 鎮靜氣勢를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餘勢를 輕視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再爆發할지 아무도 모르는 高요속에 잠겨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各國 특히 先進國에서는 保護貿易主義

의 傾向은 그 幅이나 깊이에 있어서 더 해가고 있지 緩和되는 兆徵은 보이고 있지 않다. 또 共產諸國에서의 經濟政勢 역시 無視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中共을 위시한 後進 共產諸國에서의 經濟政勢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의한 打擊은 주로 우리와 같은 先進開發途上國家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資源問題와 것들여서의 問題點도 적지 않다. 天然資源 그 중에서 소위 「새끼를 칠 수 있는」 更新天然資源은 從前에 그리 武器化되는 경우가 드물렀으나 이제 農產物을 위시하여 林產物, 水產物 領域에 까지 武器化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 緩和될 것이란 展望보다는 더 強化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國際高金利 現象 역시 世界經濟에 적지 않은 波紋을 던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美國의 經濟運用上的 한 方策으로서 高金利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의 波及影響은 적지 않다. 外債가 많고 變動金利로 支給條件이 많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는 外債負擔이 加重되어 國際收支狀況을 惡化시킬 뿐만 아니라 企業의 財務構造를 惡化시

켜 우리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는 主要因이 되기도 하여 國際高金利에서 받는 打擊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더욱 高油價에 바탕을 둔 國際收支 不均衡現象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하여간 지금 全世界經濟를 휩쓸고 있는 高物價, 高失業, 低成長이란 스태그플레이션現象이 80年代에 걸쳐 좀처럼 그리 쉽게 鎮靜 내지 安定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다는데 問題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 또 國家에 따라서 약간 鎮靜될 수는 있을 것이나 大幅의 鎮靜이란 世界經濟의 構造로 보아 그저 쉬운 일로 볼 수 없다.

2. 80年代의 國內經濟

世界經濟와 더불어 우리 國內經濟도 80年代엔 역시 많은 變化를 보이고 있다. 79年の 10.26事態, 12.12事態 등의 커다란 政治的 大衝激을 바탕으로 일어난 大混亂은 우리 經濟에 다 國際的 衝激과 더불어 커다란 衝激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에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追求하는 한편 政府는 그 동안에 많은 經濟的 措置를 連이어 講究함에 이르렀다.

緊縮基調를 바탕으로 換率引上, 金利引上으로 代表되는 1.12 經濟措置, 緊縮基調를 약간 緩和시키면서 換率의 流動化, 金利의 小幅引下가 主要內容이 된 6.5措置, 9.16措置, 9.27 企業體質強化措置, 11.8措置, 81년에 들어와서는 4.3經濟措置 등에 의해서 그 동안에 좀더 緊縮基調는 大幅 緩和되었고, 換率은 小幅의

으로 流動化된 데에 다가 金利를 또 다시 引下하는 여러 經濟施策이 마련되었다.

俗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이 있다. 第五共和國이 들어 서면서 60年代, 70年代에 걸친 經濟開發의 功을 認定하면서도 그의 過에 대해서 是正하는 새로운 經濟施策을 바라는 國民의 소리는 요란한 것으로 보여 진다. 經濟開發의 功이라 한다면 經濟開發의 意慾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도 中進國으로 浮上시켰다는 그 現實 自體는 認定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過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예를 든다면 重化學工業의 너무나 廣範하고도 全面的인 育成政策, 農業政策의 失政, 外形爲主的 輸出政策의 過誤등 여러 면에서의 論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政府는 새로운 經濟政策의 構想이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된다. 政府는 그 동안에 우선 급한대로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追求하면서 沈滯一路에 있었던 景氣의 浮揚으로 失業率을 줄이고, 또 事情이 아주 어려워진 國際收支改善을 위하여 換率의 大幅의 引上을 斷行했던 것이다. 그리고 物價安定과 內資調達이란 見地에서 浮動資金 吸收를 위한 高金利政策을 펴 나갔으나 그 時期와 方法 그리고 政策判斷을 그르쳐 그리 큰 成果가 있었다고 判斷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80年の 우리 經濟成長率이 當初 目標 7~8%에서 푸라스 3~4%로, 다시 마이너스 4%에서 또다시 마이너스 5.4%등 여러번의 修正을 거치고서도 마이너스 5.7%로 된 事實로 보더라도 얼마나 經濟적으로 어려웠던 80年代初임을 알려 주고 있다. 그 뿐인가 物價는 當初의 消·都賣價格 20%와 27%가 27%와 35

~39%로 修正이 되었고, 결국 消費者物價 35%, 都賣物價 44.2%로 높이 뛰었고, 國際收支事情은 돈 꾸어 오는 國際信用이 약간 好轉하기는 했으나, 國際收支狀況은 더욱 더 惡化되어 外債總額과 元利金償還金이 加重되고 있음이 現實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모로 보거나 새로운 經濟政策의 模索은 不可避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政府는 새로운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몇가지 내걸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自律化政策이다. 지난 날의 우리 經濟政策이 지나치게 官主導型, 干涉 내지 保護主義의이었기 때문에 이에 의한 成果도 적지 않았지만 過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自律化政策의 하나로 나온 것이 獨寡占規制 및 公正去來秩序의 確立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는 國際化政策 혹은 開放政策이라 할 수 있다. 輸出入의 보다 自由化, 企業에의 보다 自由로운 開放, 특히 外國人에의 銀行經營開放과 같은 것이 바로 그 一例라 할 수 있다. 셋째는 現實化政策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날 우리 經濟에는 적지 않은 地下經濟가 盛行하고 있음이 現實이다. 물론 어느 나라이고 간에 어느 정도의 地下經濟가 存在하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問題는 地下經濟의 정도 問題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率直히 이야기 하여 地下經濟의 規模가 엄청나게 커서 正常的인 經濟運用に 많은 支障을 주었음이 現實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是正이란 一朝一夕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엔 長久한 時日과 여러가지 措置로써만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이 地下經濟의 減縮化에는 무슨 劇的인 契機가 있어야

하는데 第五共和國을 그의 한 契機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3. 獨寡占規制 및 公正去來法

獨寡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施行을 前後하여 各界에선 많은 關心과 論議가 거듭되고 있으며 그 運用 過程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렇게 各界에서 깊은 關心과 많은 論議가 거듭되고 있는냐 하면 이 法律이 우리나라의 市場構造와 市場行動에 관한 規制法으로서 產業組織政策의 基本原理를 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 法律을 가리켜 經濟憲法이라 부르고 있는 理由도 바로 經濟秩序에 미치는 影響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法의 內容은 과연 무엇이며 그 影響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法은 「個人的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하되 獨寡占의 弊端은 적절히 規制 調整한다」는 憲法 第 102條에 根據를 두고 있다. 公正去來法은 그 法精神이 「事業者의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防止하고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保護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同法 第 1條에서 規定하고 있다. 하여간 이 法은 自由企業體制下에서 企業의 競爭促進을

위해 競爭阻害要因의 排除를 主된 內容으로 하는 것으로 獨占禁止政策이나 公正去來秩序 確立政策은 主要 先進國에서 資本主義의 機能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採擇하고 있으며 다만 그 規制方法과 規制範圍는 國家와 歷史 그리고 經濟構造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과 카나다는 이미 20世紀初에 反트러스트性 體制를 完成하였으나, 日本과 大部分의 先進工業國家에서는 第二次 世界大戰을 前後해서 獨寡占禁止法을 制定하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들 歐美先進國들은 1973年 이후 즉 第一次 石油波動 이후 獨占禁止法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物價問題의 深刻化와 各國에서 活發하게 展開되고 있는 消費者運動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海外投資, 貿易의 擴大, 多國籍企業의 出現 등 國際競爭의 相互依存關係가 깊어 지고 넓어짐에 따른 點도 있음이 強調되고 있다.

그러나 一部 反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不況期에 처해서 景氣浮揚에 適當치 않다는 이야기, 規模의 經濟로 國內外 競爭力을 強化시켜야 함에는 問題點이 있다든가 또 法制定이 曖昧하고 法的 運用面에서 行政府가 過度한 裁量權을 行使할 憂慮가 있다든가 時期와 與件 그리고 그 內容 등에서 많은 反論이 있고 또 時期尙早論 혹은 趣旨는 좋으나 그 內容이 問題라는 등 總論贊成, 各論反對등 여러 立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現實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反論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現實

적으로 보아 有效競爭體制의 確立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모두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는 듯하다. 바로 이 獨占禁止政策은 完全競爭의 實現을 政策目標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有效競爭의 實現을 圖謀하자는데 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4. 우리獨禁法の 內容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公正去來法 制定에는 그 동안에 많은 曲折이 있었다. 그러다가 1975年 12月 31일에 公布되어 1976年 3月 15日부터 施行된 全文 32條 附則 4條로 된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法에 관한 法律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第一次 世界石油危機와 各國의 資源내소 내리짐에 의하여 深刻한 問題로 擡頭된 인플레이션을 克服하여 物價安定과 消費者 保護를 主要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의 主要目的이 物價安定에 있었고, 獨寡占規制 및 公正去來의 確保는 副次的 目的이었다는 二元論的 法構造 때문에 많은 副作用이 나오게끔 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經濟力의 集中現象이 나타났으며, 이를 適切하게 規制하는 동시에 競爭을 促進해야 된다는 輿論과 함께 憲法에도 그러한 趣旨가 明文으로 立法化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經濟的 民主化措置에 劃期的인 措置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1980年 12月 31日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 改正 公布되었으며, 原典이었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에서 分散되어 獨立的으로 完全히 反트러스트 法으로서의 立法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이 法의 主要 內容을 보면 그 中心을 이루는 것이 市場支配力の 濫用과 企業結合의 制限 즉 私的 獨占의 規制(3條, 7條),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12條) 및 不公正한 去來行爲의 禁止(15條)로서 이들의 規定이 바로 本法을 떠 받치는 3個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우선 私的 獨占의 弊害를 規制하기 위한 市場支配力の 濫用禁止(3條)에 관하여는 그에 違反한 경우에는 行政處分으로서의 是正措置(5條) 이외에 罰則이 課하여진다. (55條)

私的 獨占의 原因을 規制하기 위한 補完規定으로서는 一定한 規模 이상의 會社에 대하여는 競爭制限의 原因이 되는 企業結合을 制限하고 있다(7條). 즉 會社에 의한 株式取得의 制限(7條 1號), 任員兼任의 制限(同條 2號), 會社의 合併 制限(同條 3號), 營業讓度 등의 制限(同條 4號), 系列會社의 設立制限(同條 5號)이 定하여져 있으며, 이에 違反한 경우에는 行政處분에 의한 是正措置(10條) 이외에 罰則이 課하여 지며(55條) 無課失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된다(45條).

私的 獨占의 規制에 관한 適用除外로서는 公益事業등 自然獨占行爲나 法令에 따른 正當한 行爲(47條), 無體財產權의 行使行爲(48條)가 있다.

둘째로 事業者 사이의 共同行爲에 관하여는 그 共同行爲의 登錄義務를 賦課하고(11條 1項) 登錄을 하지 아니한 共同行爲에 대하여는 이를 無效로 하는(11條 3項) 외에 罰則이 課하여 지며(55條 1項 4號) 無過失損害賠償의 責

任을 지게 된다(45條) 또한 不當한 共同行爲를 制限하기 위하여 事전에 登錄을 拒否하거나 申請事項에 變更을 加하는(12條) 이외에 事後에 是正措置를 命하게 된다(14條).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을 補完하기 위하여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나 國際契約이 不當한 共同行爲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禁止시키며(18條 1項, 23條 1項) 이에 違反한 경우에는 行政處分으로서의 是正措置가 命하여지는(19條 25條), 外에 罰則이 課하여진다. (55條 1項 4號)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과 그 補完規定에 대한 適用除外로서는 公正去來法에 規定이 있는 것(不況칼텔, 合理化칼텔)(12條但書), 一定한 組合의 行爲(49條), 公正去來法の 適用除外에 관한 法律에 指定된 各個別立法의 規定에 의거한 正當한 行爲(47條)가 있다.

세째로 不公正한 去來行爲의 禁止로서(15條) ① 不當하게 去來相對方을 差別的으로 取扱하는 行爲 ② 不當하게 競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去來하는 行爲 ③ 不當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自己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強制하는 行爲 ④ 自己 去來上의 地位를 不當하게 利用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 ⑤ 去來相對方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拘束하는 條件으로 去來하는 行爲 ⑥ 商品 또는 用役に 관하여 虛偽 또는 誇張된 廣告를 하거나 商品의 質 또는 量을 속이는 行爲로 보고 있다.

이에 違反한 경우 行政處分으로서의 是正措置가 命하여지는(16條) 外에 罰則이 課하여 지며(56條 2號) 또 不公正한 去來方法에 의한 企業結合(7條 4項)이나 事業者 團體가 構成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를 하게 하는 行爲(18

條 4項)와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國際契約의 締結은 禁止되고 (23條 1項) 있다.

특히 注意할 것은 再販賣價格 維持行爲의 制限으로서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是正措置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이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規定(第 9 章), 節次規定(43, 44條) 등으로 全文 60條 附則 8條로 되어 있다.

5. 그에 대한 方向

이제 이 법이 本格的으로 運用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最近 新聞紙上에는 거의 매일과 같이 이 법과 關聯된 記事들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에 不公正去來行爲의 몇 事例가 規制對象이 되었고 組合으로 代表되는 共同行爲도 申告를 받아 審査中이라 한다. 특히 그 事例로서는 藥業界의 價格表示와 같은 것이 論議되고 있다. 또 企業結合의 規制對象이 되는 業體도 名單이 發表되었고 企業結合의 適法審査도 着手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產業界에서도 獨寡占禁止法을 한낱 「低虎」로 볼 것만이 아니라

그 법의 內容과 運用方向 그리고 그에 대한 對策과 經營戰略 確立에 放心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食品業界라고 해서 例外일 수 없다. 食品業中 個個 企業에 따라서 이 법이 던지고 있는 波紋과 影響에는 많은 差違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食品業 中에서도 大企業은 大企業대로 또 中小企業은 中小企業대로 모여서 檢討가 있어야 하겠다.

여기서도 우선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不公正去來行爲에 關한 問題가 가장 크고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再販賣價格 維持政策과 關聯시켜 問題點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食品工業의 事業團體에 關한 것도 問題點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를 中心으로 한 共同行爲를 뜻한다.

그리고 食品工業의 大企業으로서의 獨寡占의 問題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制度實施에 따른 適應에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여간 이 法制定의 背景을 깊이 認識하고 이 법이 企業體의 經營戰略에 어떤 影響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치고 있는가를 先進國의 事例와 견주어 研究 檢討하여 適切한 對應策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